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54
----------	-------

발의연월일 : 2025. 7. 3.

발 의 자 : 이수진 · 김문수 · 김준혁
위성곤 · 백혜련 · 허성무
송옥주 · 서미화 · 전진숙
전종덕 · 정혜경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용자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의2제5항 및 제6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제48조의2에 따른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통보받은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제48조의2에 따른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통보받은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u>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제62조(과태료) ①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u>
<u>1의2.</u> (생략)	<u>1의3.</u>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